

수원시 청렴메아리

<2021. 10월 1차>

사람중심 더 큰 수원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수원시 만들기
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

2021 수원시 신년화두 : 安民濟生 (편안 안, 백성 민, 도울 제, 살 생)
안전한 시민, 활기찬 경제

□ 청렴사회로 가는길 □ 매일 실천 청렴



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

- 내 용 :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

※ 관련 규정 :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21조 및 「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제21조

관련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직자 수수 금품등의 신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신고사유)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혹은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- (신고방법)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신고- (신고사항) 신고자의 인적사항, 금품 등 제공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, 금품등 반환 여부 등○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공무원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함- 반환비용의 청구 :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 비용 청구 가능○ 신고자 우대 등의 조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,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

질의&답변

-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?
 -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14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된 금전,부동산,선물 등임

청렴 청렴시책 : 수원시 청렴팀(031-228-2842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청렴 공직비리 :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(031-228-3073)

※ 부조리 신고를 제외한 일반 민원은 『열린시장실/시장님보세요』이용